- 124. 자동차공장 열처리 작업자에게 발생한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충돌중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및 건염, 우측 견관 절 견봉쇄골관절 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봉하-삼각근하 점액낭염'
- 성별 남 **나이** 52세 **직종** 환경 미화원 **업무관련성** 낮음
- 1. 개요: 근로자 안OO는 OO자동차에 1988년 2월에 입사하여 엔진기어공장 변속기3부 /TM 부품열처리 작업을 하던 중 2006년 1월에 위 상병들을 받았다.
-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안OO는 OO자동차에 1988년 2월에 입사하여 1994.10월 까지 MTM부 열처리조(로 감시)에서 연속로 장비점검, Salt 보총, Shot Ball 보충, 전동차로 가공제품 운반작업을 수행했고, 1994.10월부터1997.2월까지 MTM부 검사조(열처리 검사)에서 제품을 절단하여 검사작업 수행, 1997.2월부터 현재까지 변속기 부서의 열처리 Keeper로써 연속로 장비점검, Salt 보충, Shot Ball 보충, 전동차로 가공제품 운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 3. 의학적 소견: 2006년 1월에 위 상병들을 진단 받았다.
- 4. 결론: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안OO은,
  - ① MRI 및 임상 소견상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 절 극상건 부분파열 및 건염,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봉하-삼각근하 점액낭염으로 진단되었고.
  - ②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극상건 부분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우측 견관절의 외전동작을 15년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는 안OO의 우측 견관절의 경도의 극상건 부분파열 및 건염(grade I) 등을 유발할 수준이라 판단되며.
  - ③ 극상건 이외에 견관절 부위에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화 소견이 동반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이 적은 좌측 견관절의 극상건 및 기타 부위에도 퇴행화 가 진행되지 않아 자연기왕증임을 배제가 가능하고,
  - ④ 업무 외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진술이나 견관절 및 회전근개의 퇴행화를 촉진시킬 업무 외적 요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근로자 안OO의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및 건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삼각근하 점액낭염'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관절증은 자연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산재요양신청병명에서 제외하여 부분승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